

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 보고서

의안 번호	3173
----------	------

2025년 12월 17일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년 10월 20일, 김혜지 의원(찬성자 21명)
- 나. 회부일자 : 2025년 10월 23일
- 다. 상정일자 : 제333회 정례회 제7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
(2025년 12월 17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혜지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관련 상위법령과 다르게 정의된 용어를 삭제하여 해당 용어 정의를 상위법령의 규정으로 대체하고 이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1) 관련 상위법령과 다르게 정의된 용어 등을 삭제함(현행 제2조 삭제).

3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■ 개요

- 본 개정안은 관련 상위법령과 다르게 정의된 용어를 삭제하여 해당 용어 정의를 상위법령의 규정으로 대체하고 이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■ 주요골자별 검토의견

가. 용어 정의 삭제(현행 제2조 삭제)

- 현행 제2조의 삭제는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'상수원' 용어가 상위법령과 대상범위 등에서 다르게 정의하고 있고 또한,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'수질개선사업'의 경우 상위법령과 불필요하게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.

[표 2] 신·구조문 대비표(안 제2조 삭제)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상수원”이란 「수도법」 제7조 · 제78조 및 「수도법 시행령」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잠실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· 공고한 지역을 말한다.</p> <p>2. “수질개선사업”이란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한강수계법”이라 한다)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상의 수질개선사업을 말한다.</p>	<삭 제>

- 먼저, 현행 제2조제1호는 ‘상수원’을 ‘잠실상수원보호구역’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「수도법」 제3조제2호¹⁾는 ‘상수원’을 취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하천·호소·지하수·해수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.
- 따라서 조례에서 ‘상수원’이라는 일반적인 법률 용어를 ‘잠실상수원보호구역’으로 국한하여 정의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정의와 달라 법령 해석상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.
- 또한, ‘상수원’ 용어는 조례 내에서 직접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바 존치 실익도 없어 보임.
- 다음으로, 현행 제2조제2호는 ‘수질개선사업’에 대해 「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(이하 “한강수계법”)」 제13조²⁾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³⁾에 따른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나,
 - 이는 상위법령에서 이미 명확히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중복하여 재정의한 것으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의 단순성에 비추어 볼 때 삭제하더라도 조례 운영에 별다른 문제가 없

1) 「수도법」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상수원”이란 음용·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(取水施設)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·호소(湖沼)·지하수·해수(海水) 등을 말한다.

2)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(수질개선사업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시장·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계획(이하 “수질개선사업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시장·광역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시장·군수는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3)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2조(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) ①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계획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말한다.

을 것으로 판단됨.

- 참고로, 현행 조례 제5조에서 “「한강수계법」 제17조제2항⁴⁾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⁵⁾에 따른 사업”과 같이 상위법령 조항을 직접 인용하고 있어 정의 규정을 상위법령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오히려 법령과 조례 체계상 바람직해 보임.

나. 기타 용어 정비 등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4조제3호, 제5조)

-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서 “잠실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” 문구를 삭제하고 「한강수계법」 제16조⁶⁾만 인용도록 정비하려는 것임.

[표 3] 신·구조문 대비표(안 제1조)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잠실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</u> 에 따라서서 울특별시 한강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,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----- ----- ----- -----.

- 현행 조문은 특정 사업(잠실상수원 수질개선)에 한정된 표현으로 조

-
- 4)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(특별회계의 세입·세출) ② 특별회계의 세출(歲出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제22조 각 호(같은 조 제1호·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)의 사업에 드는 비용
 2.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
 - 5)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(특별회계의 세출)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.
 - 6)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(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) ①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수질개선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② 특별회계는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관리·운영한다.

례의 적용 범위가 협소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「한강수계법」의 입법 취지에 맞게 조례의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됨.

- 안 제2조 및 안 제3조는 현행 조례 제2조의 삭제에 따라 종전의 제3조를 제2조로, 종전의 제3조의2를 제3조로 조문 번호를 정비하면서, 안 제2조는 종전의 제3조 본문 중 ‘시장’을 ‘서울특별시장’으로 수정하려는 것인데,
 - 특히, 안 제2조는 현행 조례 제2조제1호의 약칭 정의가 삭제됨에 따라 본문 중 ‘시장’을 ‘서울특별시장’으로 풀어서 표기하려는 것으로 조례 체계상 타당한 조치라 하겠음.
- 안 제4조제3호 역시 현행 조례 제2조의 삭제로 인해 해당 조항에서 「한강수계법」이 처음 인용됨에 따라 법률의 제명을 정확히 명시하고 약칭을 새로 규정하려는 것으로,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음.
- 안 제5조는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맞춰 인용 형식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.

[표 4] 신·구조문 대비표(안 제2조, 제3조, 제4조제3호, 제5조)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관리 · 운영)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(이하 “회계”라 한다)는 <u>시장</u> 이 관리 · 운영한다.	제2조(관리 · 운영)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장</u> -----.
제3조의2 (생 략)	제3조 (현행 제3조의2와 같음)
제4조(세입)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· 2. (생 략)	제4조(세입) ----- 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<u>한강수계법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</u>	3.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

<p><u>금으로부터의 전입금</u></p> <p>4. · 5. (생 략)</p> <p>제5조(세출) 회계의 세출은 <u>한강수계법</u> 제17조제<u>2항</u>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.</p>	<p>관한 법률」(이하 “한강수계법”이라 한다)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</p> <p>4. ·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세출) ----- 「<u>한강수계법</u>」 제17조제<u>2항</u> ----- --.</p>
--	--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 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혜지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173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: 2025년 10월 20일
발의자: 김혜지 의원(1명)
찬성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동욱,
김영철, 김원태, 김재진,
김종길, 김태수, 남궁역,
남창진, 민병주, 서상열,
유만희, 윤기섭, 윤종복,
이상욱, 이성배, 이종환,
임춘대, 허훈, 홍국표
의원(21명)

1. 제안이유

- 관련 상위법령과 다르게 정의된 용어를 삭제하여 해당 용어 정의를 상위법령의 규정으로 대체하고 이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관련 상위법령과 다르게 정의된 용어 등을 삭제함(안 제2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수도법」
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(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잠실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”를 “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”로 한다.

제2조를 삭제하고, 제3조 및 제3조의2를 각각 제2조 및 제3조로 한다.

제2조(종전의 제3조) 중 “시장”을 “서울특별시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한강수계법”이라 한다)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제5조 중 “한강수계법 제17조제2항”을 “「한강수계법」 제17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잠실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한강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,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상수원”이란 「수도법」 제7조·제78조 및 「수도법 시행령」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잠실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·공고한 지역을 말한다.</p> <p>2. “수질개선사업”이란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한강수계법”이라 한다)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 <u><삭 제></u></p>

<p><u>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</u> <u>상의 수질개선사업을 말한다.</u></p> <p><u>제3조(관리 · 운영)</u>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(이하 “회계”라 한다)는 <u>시장이</u> 관리 · 운영한다.</p> <p><u>제3조의2 (생 략)</u></p> <p><u>제4조(세입)</u>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· 2. (생 략) 3. <u>한강수계법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</u> 4. · 5. (생 략) <p><u>제5조(세출)</u> 회계의 세출은 <u>한강수계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</u> 말한다.</p>	<p><u>제2조(관리 · 운영)</u> ----- ----- -- <u>서울특별시장</u>-----.</p> <p><u>제3조 (현행 제3조의2와 같음)</u></p> <p><u>제4조(세입)</u>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「<u>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</u>」(이하 “<u>한강수계법</u>”이라 한다) 제20조에 따른 <u>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</u> 4. · 5. (현행과 같음) <p><u>제5조(세출)</u> ----- 「<u>한강수계법</u>」 제17조제2항 ----- ----- -----.</p>
---	---

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구 수정 등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.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재정분석과장 이선희
추계세제팀장 김중현
추계분석관 이설화
☎ 02-2180-7952
e-mail : sseol789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